



제 7623 호

경기도보

발행일 2024년 11월 7일

발행 경기도

도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차 례

규 칙

- 경기도규칙제4131호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때문에경기도규칙용어등일괄정비규칙 2
- 경기도규칙제4132호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3

고 시

- 경기도고시제2024-31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규·변경·말소)고시 4

공 고

- 경기도공고제2024-2292호 부의안건공고 5
- 경기도공고제2024-6059호 도로사용개시및노선폐지에관한공고(위임국도75호선가평달전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6
- 평택소방서공고제2024-17호 「소방기본법」위반(소방자동차전용구역불법주차)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7

의 회

- 경기도의회공고제2024-383호 「경기도입양인식개선교육활성화조례안」입법예고 9

시군행정

- 파주시고시제2024-551호 파주도시관리계획(서원밸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13
- 안성시공고제2024-2781호 공도마정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3호선외1노선)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 17
- 의왕시고시제2024-19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_백운호수초·중통합학교)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19
- 가평군고시제2024-340호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결정및지형도면고시 · 20
- 가평군고시제2024-341호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결정및지형도면고시 21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6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22

제30회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궤
2024년 11월 7일

경기도 규칙 제4131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

제1조(「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조(「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3조(「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 절차”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변경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현행화 및 법체계 통일성을 도모함

제30회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궤
2024년 11월 7일

경기도 규칙 제4132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원회) ①「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 관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감사)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수탁기관의 연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해당 위탁사무에 관한 감사 의견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회계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 위탁사무의 기준과 절차 등이 정비되어 그 시행(25.1.1.)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고시 제2024-31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규·변경·말소) 고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제3항에 따라 2024. 10월 신규, 변경 및 말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7.

경 기 도 지 사

연번	단체 명칭	대표자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업	등록일	등록 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1	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	조우경	구리시 이문안로113번길 13, 2층 (수택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성문화, 생명존중 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 ○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2024.10.21.	신규	
2	사단법인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정명원	군포시 한제로 30, 비전관 107호 (당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 프로그램, 한글 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 등 	2024.10.25.	신규	
3	한컴봉사회	유병욱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의료지원, 건강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2004.01.12.	변경	대표자 (2024.10.18.)
4	국학운동시민연합 경기도연합회	이민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1 (매산로3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정신 함양 사업 등 	2000.05.17.	변경	대표자 (2024.10.25.)
5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강응민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1 (관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교육운동 사업 등 	2000.06.01.	변경	대표자 소재지 (2024.10.30.)
6	마인드온발달심리상담센터	김한희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37, 202호, 301호 (도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지원 활동 ○ 저소득 아동 보호 ○ 상담사업 및 심리치료사업 등 	2001.04.17.	변경	소재지 (2024.10.31.)

경기도 공고 제2024-2292호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2024. 11. 5. ~ 12. 19.)시 부의할 3차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경 기 도 지 사

1.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 공고 제2024-6059호

도로사용개시 및 노선폐지에 관한 공고(위임국도75호선 가평 달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및 노선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경 기 도 지 사

1. 도로의 종류 : 국도
2. 노 선 명 : 위임국도 75호선(가평~화천)
3. 사용개시(전용) 및 폐지 구간 : STA.0.000(가평현충탑) ~ 0+644.4(상수도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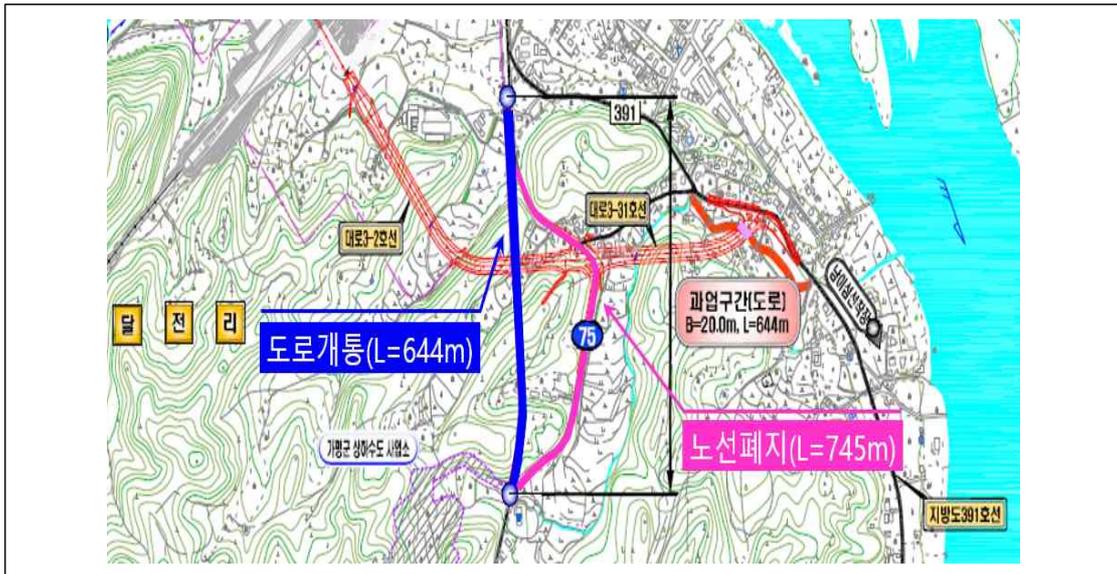
구 분	시 점	중요경과지	종 점	연장(km)
사용개시 구간	가평읍 달전리 469-3	가평읍 달전리 495-13	가평읍 달전리 510	0.644 (4,2차로)
폐 지 구간	가평읍 달전리 산38-9	가평읍 달전리산47-6	가평읍 달전리 산51-1	0.745 (2차로)

4. 개시 및 폐지일자 : 2024. 11. 7. (수) 09:00

5. 비 고

- 관련 도면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전화 : 031-8008-8329)에 비치 공람
- ※ 첨부서류 : 위치도 1부

6. 위치도



평택소방서 공고 제2024-17호

「소방기본법」 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7.
평택소방서장

1. 건 명 : 「소방기본법」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명	위반대상	관계인	거주지 주소	위반법규	납부기간 (의견제출기간)	지방세압계좌
				위반사항	과태료금액(원)	가상계좌
도승일	18저7629	도승일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93-20 부영아파트 302동 808호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2024. 11. 22.	4100022451100747519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200,000 (사전감경 금액)	농협 790216-74-112727

4. 공고기간 : 2024. 11. 7. ~ 11. 22.
5. 과태료 및 의견제출 문의 : 평택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031-8053-6163)
6. 공시송달 내용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감경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7. 위 공고문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평택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031-8053-6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기본법」 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택소방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3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1. 7.
경 기 도 의 회 의 장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 입양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전문강사의 위촉 또는 초빙, 연수기회 제공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지원센터, 도내 시·군,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46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3일(수)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내 시장·군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4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사업 계획 및 활성화 방안
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추진을 위한 소요 자원 조달
4.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입양인식 개선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양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사업
2.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사업
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 및 홍보 사업
4.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양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
2.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전문강사) ① 도지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군, 교육청,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관계 법령 발췌서
------------	------------------

□ **입양특례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여,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1조(자조모임 활성화 등) 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내 자조모임이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모임 활동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언론과 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경기도민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파주시 고시 제2024-551호

파주 도시관리계획(서원밸리·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서원밸리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7.
파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87,673.2	증)11,839	1,299,512.2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87,673.2	증)11,839	1,299,512.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1,299,512.2㎡)	1,299,512.2	100%이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녹지추가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401	광탄발랑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참조	1,299,512.2	2004. 02.07	-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401	광탄발랑 개발진흥지구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 면 적 : 1,287,673.2㎡→1,299,512.2㎡ ○ 지구의세분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녹지추가

경 기 도 보

제7623호

2023. 11. 7. (목)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401	광탄 발랑 지구단위계획 구역	관광·휴양형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1,287,673.2	증)11,839	1,299,512.2	2004. 02.07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401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 면 적 : 1,287,673.2㎡ →1,299,512.2㎡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녹지추가

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 시설	골프장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1,275,973.2	-	1,275,973.2	2010. 11.29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체육시설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 면 적 : 1,275,973.2㎡ 	-

경 기 도 보

제7623호

2023. 11. 7. (목)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위 치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287,673.2	증) 11,839	1,299,512.2	-	1,287,673.2	증) 11,839	1,299,512.2	-
A	A 체육시 설 용지	1,275,973.2	-	1,275,973.2	광탄면 발랑리 123-1번지 일원	415,948.0	증) 6,785	422,733	코스 시설
					광탄면 발랑리 133-1번지 일원	12,594.0	-	12,594.0	건축 시설
					광탄면 발랑리 126-26번지 일원	131,617.0	증) 4,225	135,842.0	기반 시설
					광탄면 발랑리 126-2번지 일원	714,814.2	감) 10,010	704,804.2	녹지
B	B 관광 휴양 시설 용지	11,700.0	감) 31.0	11,669.0	광탄면 발랑리 109-2번지 일원	3,190.0	-	3,190.0	다목적 광장
					광탄면 발랑리 90-1번지 일원	2,617.0	감) 31	2,586.0	조경 녹지
					광탄면 발랑리 90-3번지 일원	2,010.0	-	2,010.0	원형 보전 녹지
					광탄면 발랑리 90-2번지 일원	2,650.0	-	2,650.0	이벤트 홀
					광탄면 발랑리 90-2번지 일원	1,233.0	-	1,233.0	기반 시설
C (신 설)	C 녹지 시설 용지	-	증) 11,870	11,870.0	광탄면 발랑리 126-28번지	7,008.0	증) 7,008	7,008.0	원형 녹지
					광탄면 발랑리 414-6	2,380.0	증) 2,380	2,380.0	원형 녹지
					광탄면 발랑리 126-31번지 일원	2,482.0	증) 2,482	2,482.0	기반 시설 (연결 도로)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33-1번지 일원 (클럽하우스,티하우스, 스타트하우스,경비실, 골프연습장등)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골프장안에서 허용하는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이외의 용도는 불가 단, 그늘집(티하우스)는 휴게음식점만 허용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불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중앙,동서,남,북측)
		형태	장방형, 정방형, 경사, 박공, 평지붕
		색채	연한 황갈색, 흑색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 관광·휴양형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B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90-2번지 일원 (이벤트홀)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다. 자동차영업소, 마. 총포판매소, 데.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및 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중앙,동서,남,북측)
		형태	장방형, 박공
		색채	아이보리, 흑색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4.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청 도시계획과(☎031-940-4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공고 제2024-2781호

공도 마정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3호선의 1노선)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00-57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3호선의 1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7.
안 성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00-577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당초)공도 마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3-46호선 외1노선)사업
 변경)공도 마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3-173호선 외1노선)사업
- 나. 명 칭 : 당초)공도 마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46호선 외1노선)개설공사
 변경)공도 마정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173호선 외1노선)개설공사

※안성시 고시 제2023-103호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경미한변경)(2023.3.31.) 사항 반영

3. 사업의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3	173	6	국지 도로	225	소로3-169호선	소로3-165호선	일반 도로	공도읍 마정리 200-242	안성시고시 제2001-25호 (2001.3.26.)	
시행	소로	3	173	6	국지 도로	84	소로3-169호선	공도읍 마정리 200-128	일반 도로			
결정	소로	3	169	6~8	국지 도로	1,634	중로2-64호선	소로3-72호선	일반 도로	공도읍 마정리 200-47	안성시고시 제2001-25호 (2001.3.26.)	
시행	소로	3	169	6~8	국지 도로	31	공도읍 마정리 200-598	공도읍 마정리 200-598	일반 도로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안성시장(도로시설과)
- 나.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2022년 10월 6일
- 나. 준공예정일 : 당초)2024년 12월 31일
 변경)2025년 12월 31일

6. 열람(의견제출)기간 : 2024. 11. 07.~2024. 11. 21.(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경 기 도 보

제7623호

2023. 11. 7. (목)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관리부서 별도 협의
 ※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정책과(☎031-678-2723), 도로시설과(☎031-678-593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도로: 소로3-173호선)

조서 번호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기정	공도읍 마정리	200-263	잡	13	9	공	안성시				
2	기정	공도읍 마정리	200-128	도	258	130	공	안성시				
3	기정	공도읍 마정리	200-517	임	6478	366	이*봉	평택시 통북동 **-*				
	변경	공도읍 마정리	200-577	임	342	342	공	안성시				
4	기정	공도읍 마정리	200-47	도	6749	5	공	안성시				
	변경	공도읍 마정리	200-593	도	5	5	공	안성시				
계	기정				13,498	510						
	변경				618	490						

■ 토지조서(도로: 소로3-169호선)

조서 번호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기정	공도읍 마정리	200-517	임	6478	137	이*봉	평택시 통북동 **-*				
	변경	공도읍 마정리	200-598	임	137	137	공	안성시				
계	기정				13,498	137						
	변경				137	137						

의왕시 고시 제2024-192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_백운호수초·중 통합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의왕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건축과,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11. 7.
의 왕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105번지
 - 1)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사업
 - 2) 명칭: 백운호수초·중 통합학교
 - 나. 사업의 규모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	1	학교	초중학교	학의동 1105	2,845	경기도 고시2015-7호 (2015. 1. 23.)	
금회 시행	1	학교	초중학교	학의동 1105	2,845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제디 410호
 - 나. 성 명: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3. 사업의 착수일 : 사업승인일
준공예정일 : 2026. 01.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위 도시계획시설은 준공 검사를 마친 때 관리청인 의왕시에 귀속됨.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토지 조서>

연번	지명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학의동	1105	대	2,845	2,845	의왕시	공			

가평군 고시 제2024-340호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 조종면 현리 275-1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7.
가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1)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가. 교통시설
 - (1) 주차장
 - ①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주차장	가평군 조종면 현리 275-10번지 일원	-	증)1,490	1,490	-	-
신설	3	주차장	가평군 조종면 현리 274-10번지 일원	-	증)1,689	1,689	-	-

②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주차장	주차장 신설 면적 : 1,490㎡	■ 시가지내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차장	주차장 신설 면적 : 1,689㎡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도시과(☎031-580-235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평군 고시 제2024-341호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268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1. 7.
가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1)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가. 공간시설
 - (1) 광장
 - ①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광장	경관 광장	청평면 호명리 268번지 일원	-	증) 4,728	4,728	-	하천 중복결정 (2,572㎡)

②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광장 (경관광장)	▶경관광장 신설 - 면적 : 4,728㎡	▶북한강 뱃길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주요관광지가 밀집된 지역에 뱃길 거점인 공공선착장 및 연계 사업을 위한 경관광장을 조성 ▶국가하천1과 중복결정(2,572㎡)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도시과(☎031-580-235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 11. 7.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하천의 명칭: 신천·임진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엘지유플러스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로 22, 5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55번지 외 3필지
 - 면 적 : 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통제소 CCTV용 통신주 설치
 - 내 역 : 통신주(H=8m) 4기
5. 점용기간 : 2024.11.04. ~ 2029.11.03.
6. 공사기간 : 2024.11.04. ~ 2024.12.31. 중 2일